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49026 저작권등록 말소 청구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제윤, 박선우

피 고 1. 피상속인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C¹⁾

2. D

3. 사단법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우홍균

4. F 주식회사

5. 주식회사 G

6. H 주식회사

7. I 주식회사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89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는 2023.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B을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그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5. 16. 망 B의 상속인인 J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망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1.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2. 10. 24.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같은 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C은 위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J에 대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C이 망 B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던 점 및 C이 위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를 위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38 판결 등 참조).



8. K 주식회사

피고 5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해온

변 론 종 결 2026. 6. 9.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피상속인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²⁾은 별지1 기재 피고 사단법인 E 신탁관리자 명부에 작곡자 명의로 등록된 가수 L 가창의 저작물(등록번호: M)에 관한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일간지에 게재한다.
4. 위 제3항을 위반할 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반한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여전히 '피고 J'를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최초 이미 사망한 망 B를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그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그의 상속인인 J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고, 이후 피고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C이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제1항에서 구하는 등록 말소절차 역시 망 B이 부담하던 등록 말소의무가 피고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C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취지 제1항 중 '피고 J'은 '피상속인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C'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³⁾는 'O'라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의 작곡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써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일부 지분을 승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사단법인 E(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을 관리하면서 그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협회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아래와 같이 관리저작물로 등록되었다.

○ 저작물명/ 저작물 코드/ 공표일자: O/ P/ 1970. 5. 1.

○ 가수명/ 작사가/ 작곡가: Q/ R/ 망인

라. 망 B 등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L이 가창한 'O(S BALLAD)'라는 가창곡(이하 '이 사건 가창곡'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가창곡이 수록된 'T'라는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이 제작·발매되어 U, V, W 등의 음원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었다. 위 가창곡은 2009. 5. 7.경 피고 협회에 신고되어 아래와 같이 관리저작물로 등록되었다.

○ 저작물명/ 저작물 코드/ 공표일자: O(S BALLAD)/ M/ 2009. 4. 20.

3) 망인은 1987. 8. 31. 사망하였다.



○ 가수명/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L/ R/ 망인/ 망 B·D

마.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2008. 8. 5.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와 드라마 'Y'(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X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드라마를 2008. 11.경부터 2009. 5.경까지 총 129회에 걸쳐 방송하였고, 이 사건 가창곡은 이 사건 드라마 제125회 중 일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바.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에 관여하였고,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는 'Z'라는 명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운영하면서 2021. 11.경부터 이 사건 드라마를 전송하였으며,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는 'AA'라는 명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운영하면서 2021. 7.경부터 2022. 4.경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전송하였다.

사. 망 B는 2021.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2. 10. 24.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 C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3, 14, 16, 17, 19, 22, 25, 49, 53, 55, 63,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 B는 원고 등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창곡을 작성하고, 이를 별개의 편곡저작물인 것처럼 피고 협회에 신고·등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창곡은 이 사건 음



악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그 주된 가락 등을 그대로 이용한 복제물에 불과하므로, 망 B에게 별도의 편곡자 지분이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가창곡에 관하여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관리저작물로 등록하고 망 B에게 편곡자 지분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하여,⁴⁾ 저작권 신탁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및 피고 K은 망 B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개작하거나, 이를 이 사건 음반 및 이 사건 드라마에 수록하여 제작·유통·방송·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른바 '싱크권'(Synchronization License)이라고 주장하는 권리도 침해하였다.

4)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의 성명 및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변경·이용 및 성명표시와 관련하여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그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가창곡에 관한 저작물 등록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일부청구). 또한 원고는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에 따라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일간지에 게재할 것과 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4) 원고는 망 B 등이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등록됨으로써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2/12 지분을 원저작권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협회가 그 사용료 분배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등록된 망 B 등에게 사용료의 2/12를 분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 자체가 망 B 등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법률상 원인이나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경우 피고들이 각 위반일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 D

피고 D는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표시된 D와 다른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 D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협회

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위 복제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전 항변).

나)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 등록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등록과는 구별되는 피고 협회 내부의 저작물관리 데이터베이스 등재에 불과한바, 피고 협회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관리저작물로 등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그 저작물이 실제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창곡을 관리저작물로 등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신탁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창곡의 등재 또는 이용이 그 성질 및 정도에 비추



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협회가 망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F

피고 F는 2011. 12. 26.에 설립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등록, 이 사건 음반의 제작·유통 또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방송 당시로 주장하는 2009. 4.경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망 B 및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 각 행위에 관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 또는 이 사건 가창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피고 G, 피고 H, 피고 I 및 피고 K

가) 이 사건 가창곡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주된 가락을 특징적인 변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가창자의 목소리나 음역대의 차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창작적 개변이 이루어진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창곡을 이 사건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거나 그 드라마를 방송·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방송권·전송권 등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그 신탁범위에 속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다) 피고 G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사인 X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사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드라마에 사용되는 음악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



보하였음을 보증받았고, 피고 H, I 및 K은 완성된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전송한 자들로서 그 제작 과정에서 이 사건 가창곡이 사용된 경위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들이 망 B 또는 피고 협회와 어떠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는지, 특히 피고 협회의 저작물 등록이나 사용료 분배 과정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 망인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창곡의 방송·전송으로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들이 망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협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실제로 그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 흡수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가창곡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침해만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창곡이 2차적저작물로 신고·등록 및 이용됨으로 인한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 등록 및 사용료 분배행위의 위법성과 저작권 신탁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고는 별개로 이 사건 가창곡이 이 사건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방송·전송된 것에 대하여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사후 인격적 이익도 침해되었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중 일부가 피고 협회에 신탁된 권리에 속하는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해당 권리를 직접 행사할 실체법상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각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침해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전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협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창곡의 저작물 등록 말소청구

원고는 복제물에 불과한 이 사건 가창곡이 2차적저작물인 것처럼 신고·등록됨으로 인하여 망 B에게 편곡자 지분에 따른 사용료가 분배되고, 나아가 이 사건 가창곡이 이 사건 드라마에 삽입되어 방송·전송되는 등 그 등록을 기초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그 침해의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로서 이 사건 가창곡의 저작물 등록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 B이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하여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창곡의 저작물 등록 말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창곡에 관한 저작물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및 저작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1조).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은 '관리저작물'을 관계권리자가 피고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저작물로, '저작물자료'를 작품신고, 편곡신고 등에 따라 저작물의 관계권리자와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로 각 정하고 있고(동 규정 제2조 제2호, 제4호), '관계권리자'는 위 저작물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5조). 또한 편곡자는 해당 편곡이 사용된 경우에만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동 규정 제3조 제3항). 나아가 피고 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수탁자가 '주무관청에 신탁저작권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동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협회가 위탁자의 신고를 받아 저작물을 관리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저작물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권리자와 사용료 분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피고 협회 내부의 절차나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 B이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망 B에게 이전되거나 제한·소멸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창곡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므로 망 B에게 편곡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창곡이 복제물인지, 아니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는 그 저작물 자체의 성격 또는 그 작성행



위가 어떠한 저작권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상 등록의 효력과는 구별된다.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창곡이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행위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을 침해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저작물이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별도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권의 귀속이나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은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가 관계권리자인 경우 그 사용료를 각 5/12, 5/12 및 2/12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14조 제4호). 그러나 이는 해당 편곡이 사용된 경우 그 편곡자를 별도의 사용료 분배대상자로 정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분배비율을 정한 것일 뿐, 원저작자에게 귀속된 저작권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지분 2/12를 편곡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 B이 이 사건 가창곡으로 인하여 편곡자 몫의 사용료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권 중 2/12에 해당하는 지분이 망 B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은 음악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저작물로 등록하려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동 규정 제4조 제3항), 위탁자가 등록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확인·보증하며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5조 제1항). 또한 제4조에서 정한 등록서류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수탁자가 등록 접수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8조 제4호). 즉,



위 각 규정은 관리저작물의 신고·등록 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자료와 신고자의 확인·보증 및 피고 협회의 등록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가창곡의 등록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승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위 규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망 B에게 이전되거나 제한·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나아가 위 신고·등록규정은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등록을 변경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동 규정 제6조 제2항),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며(동 규정 제9조), 등록된 저작물의 권리 침해 또는 귀속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10조).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협회의 등록은 저작재산권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 및 사용료 분배를 위한 내부적인 관리 절차임을 알 수 있다.

2)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복제권 침해 여부

원고는 망 B이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이 사건 가창곡을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음반 및 이 사건 드라마에 수록하는 등으로 이용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⁵⁾ 그러나 이 사건 음악저

5) 원고는 이 사건 가창곡이 복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망 B이 이를 편곡저작물로 등록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은 것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권리가 창설된다거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그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작물에 관한 복제권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신탁기간 중 위 복제권을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망 B의 이 사건 가창곡 작성 등 행위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싱크권 침해 여부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 187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일관되게 이 사건 가창곡이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가창곡을 이 사건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영상과 함께 이용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 B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창곡을 영상과 결합하는 이른바 '싱크 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싱크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의 지분적 권리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싱크권'을 저작권법에 열거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별개의 독립된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⁶⁾ 또한 이 사건 드라마가 해



외에서 전송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 및 이 사건 드라마에의 삽입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그 전송되는 외국의 법률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싱크권이 독립된 저작재산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원고는 망 B 등이 망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창곡을 등록·공시하고, 망인을 연상시키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드라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망 B의 이 사건 가창곡 작성·등록 등 행위 당시에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별개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및 구제수단 등을 정한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망 N의 성명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자로 표시된 것은 그 자체로 망 N의 성명이 가지는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음악저작물은 그 저작자와 구별되는 저작물 자체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음악저작물 자체가 망인의 성명·초상·음성 등과 같이 망인을 식별하기 위

6) 원고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에서도 '싱크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IPO 홈페이지 또는 WIPO 보고서에 '싱크권(synchronization rights)'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이 곧바로 WIPO 저작권 조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인격적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 B이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결요지 게재 및 간접강제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인 망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여(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항), 망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는 그 유족에게 망인의 사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망인의 생전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인 점, ② 이 사건 가창곡에 관한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도 망인이 작곡자로 표시되어 있고 망 B은 편곡자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가창곡의 등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자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전송 과정에서 망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가창곡이 이 사건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형식이 망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왜곡하거나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망 B이



이 사건 가창곡을 작성·등록하거나 이를 이 사건 드라마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성명·경력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망인을 비방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 B의 행위가 그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B의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판결요지 게재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망 B와 함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개작하여 이 사건 가창곡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 협회에 편곡저작물로 등록한 후 음반의 제작·유통 및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전송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판결요지를 게재할 의무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협회가 피고 D에게 부여한 신탁자코드는 'A B'인 반면,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표시된 'D'의 신탁자코드는 'AC'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협회의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표시된 'D'는 협회 관리 여부가 '비관리'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서 저작자명과 함께 신탁자코드 및 관리 여부가 해당 저작자를 구별하는 정보로 표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성명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가 이 사건 가창곡의 편곡자로 표시된 'D'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협회가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창곡을 관리저작물로 등록하고 망 B에게 편곡자 지분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과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협회가 신탁계약상 또는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협회가 원고의 손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은 관리범위를 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동 약관 제6조). 또한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은 신고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탁자가 확인·보증하도록 하고(동 규정 제5조 제1항), 피고 협회는 제출서류의 미비 등에 관하여 등록 접수를 반려하거나 사후 이의신청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유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6조 제2항, 제8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협회가 신고 당시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을 넘어, 모든 신고저작물에 관하여 원저작물과 직접 비교하여 복제물인지 2차적저작물인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의 존재 및 효력까지 독자적으로 검증·판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 등록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과 구별되는 신탁관리업무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그 등록 자체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망 B에게 이전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협회의 저작물 등록·관리행위까지 위 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이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에게 각 5/12, 5/12 및 2/12의 비율로 사용료를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동 규정 제14조 제4호), 이는 관계권리자 사이의 사용료 분배기준을 정한 것일 뿐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사용료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편곡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 협회가 이 사건 가창곡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이 사건 음반 또는 이 사건 드라마에 수록하여 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협회가 원고의 복제권·방송권·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이른바 싱크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거나 그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망 N의 성명이 작곡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 자체가 망인을 식별하기 위한 인격적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가창곡의 이용으로 징수한 사용료 중 편곡자 몫을 망 B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3자에게 분배된 사용료 상당액이 피고 협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저작물의 등록·관리 또는 사용료 분배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판결요지 게재 및 간접강제 청구

살피건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망인의 생전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 협회가 망인의 사후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왜곡하여 이용하였다거나 그 밖에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 등록은 저작물의 신탁관리와 사용료 분배를 위한 신탁자 관리자료상의 등재에 불과하고, 그 등록·관리행위 자체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망인의 저작자 지위를 달리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는 망 N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자로 표시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 협회의 위와 같은 등록·관리행위가 그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협회가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판결요지 게재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F가 망 B 및 피고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가창곡이 수록된 음반을 제작·유통하고, 피고 G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가창곡이 삽입된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재산권 및 망인의 퍼블리시티권과 사후 인격적 이익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판결요지를 게재할 의무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2011. 12. 26. '주식회사 AD'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7. 6. 15. '주식회사 AE'으로, 2020. 6. 1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된 회사이다. 즉, 이 사건 가창곡이 피고 협회에 신고·등록되고 이를 수록한 음반이 제작·발매되었으며, 이 사건 드라마의 제128회가 방송된 시점은 모두 2009년경으로서 피고 F가 설립되기 이전이다. 따라서 갑 제6,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가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등록, 그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음반의 제작·발매 및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방송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F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가창곡이 수록된 음반을 직접 유통하거나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전송하는 등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별개의 이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 G, 피고 H, 피고 I 및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G, 피고 H, 피고 I 및 피고 K이 이 사건 가창곡이 삽입된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전송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권재산권과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였다거나 그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G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X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사로 하여금 드라마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 등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G가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 또는 피고 협회에 대한 신고·등록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할 당시 이 사건 가창곡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 H은 이미 제작된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에 관여하였고, 피고 I와 피고 K은 이미 제작·방송된 이 사건 드라마를 제공받아 각 OTT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가창곡의 작성·등록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들이 당시 이 사건 가창곡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송·전송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방송권·전송권은 피고 협회의 관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영상물의 배경음악으로 삽입·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음악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방송·전송행위가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상 이른바 싱크권



을 별개의 독립된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 자체가 망인을 식별하기 위한 인격적 표지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방송·전송한 것이 곧 망인의 성명 등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가. 2)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결요지 게재 및 간접강제 청구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전송 과정에서 망 N의 성명이 작곡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품성·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을 변경·왜곡하였다거나, 망인의 품성·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부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앞서 가.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창곡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배경음악으로서 이용된 것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판결요지 게재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10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상수

판사 임성현



별지1

부제목 :

앨범명/프로그램명 :

가수명 :

공표일자 : 2009-04-20

기획사/방송사 :

가사첫소절 :

분류	저작자명	권리자	협회관리
A			관리
C			관리
			관리
AR			관리
AR		비관리	



별지2

관련 규정

1. 피고 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2017. 4. 13. 개정된 것)

제3조(저작권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상의 관리범위

제9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3조(소권)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저작권 등록 및 등록경비)



① 다음 각 호의 수속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주무관청에 신탁저작권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신탁계약의 종료업무 수속을 하였을 경우

② 전항의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3.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4.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을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제19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속인 또는 총괄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승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발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는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약관, 저작권신탁계약체결절차에관한규정, 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약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별도의 수속 없이 본 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권리자 : 한 저작물에 관계되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이들의 저작재산권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출판자를 말한다.
2. 저작물자료 : 작품신고, 편곡신고, 역사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관계권리자,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4. 관리저작물 : 관계권리자가 본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하며,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 ①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
- ③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

제5조(관계권리자의 확정방법 등)

관계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한다.

제14조(분배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관계권리자 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4. 작곡자 5/12, 작사자 5/12, 편곡자 2/12

3.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2004. 3. 24. 제정, 2024. 1.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사업) 제1호, 제13조(회원의 권리),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23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제1항 제5호에 의거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 및 저작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

- ① 위탁자는 협회에서 정한 저작물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본인의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음반, 도서, 음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빙자료에서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신보음반 출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③ 음악저작물을 역사,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 등록의 확인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등록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확인 보증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저작물 등록 확인 및 이의 신청)

- ① 위탁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확인 보증하여 신고한 저작물에 대해 수탁자는 등록 후 그 사실 관계를 위탁자 및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전항에 의거 공고한 내용에 대해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제8조(저작물 등록 접수 반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 등록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저작물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2. 위탁자의 신원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제3자(비회원)로부터 양수받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4. 제4조에서 정한 저작물 등록서류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5. 저작물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6. 제4조 제1항에 정한 증빙자료와 음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9조(저작물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명 등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등록된 저작자 또는 권리출판사의 요청으로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공표된 저작물의 증빙자료 또는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기획사 또는 등록된 저작자의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등록된 저작자가 저작자명·지분 변경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3. 권리출판사는 저작물의 정보 변경 내용을 확인 보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위탁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권리정보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저작물 등록정보를 변경한다.

제10조(저작물 경합 및 지급보류)

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경합으로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한다.

1.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또는 귀속 등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접수된 경우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기타 사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2. 지급보류가 필요한 부서에서 대상저작물의 지급보류 사유와 시점을 기재하여 작품등록부서에 통보한 경우

② 경합으로 지급보류된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류를 해제한다.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나. 공증된 양 당사자의 합의서를 접수한 경우

2. 형사상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기타 사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가.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나.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3. 지급보류를 요청한 부서에서 대상저작물의 지급보류 사유가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10

③ 본조에 따라 지급보류 신청 혹은 해제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